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제정 2008. 6. 9. 고시 제 211 호  
개정 2009. 8. 21. 고시 제 755 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 1019 호  
개정 2011. 6. 17. 고시 제 290 호  
개정 2011. 12. 29. 고시 제 837 호  
개정 2013. 4. 22. 고시 제 149 호  
개정 2013. 6. 28. 고시 제 385 호  
개정 2014. 5. 23. 고시 제 287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교육·훈련 방법 등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이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자의 경우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제1항 단서에 따라 90학점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제4조(분할교육) ① 건설기술자는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4호의 나목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교육은 교육·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교육·훈련 분야 및 순서) ① 건설기술자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유사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는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각 목 1)의 교육·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 학력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시에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의 시기) ①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1), 나목 1) 및 다목 1)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1)의 “건설기술 관련 업무”라 함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2), 나목 2) 및 다목 2)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승급교육”이라 한다)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기 위한 자격·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영 제43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라 특급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종료일 이후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교육이수기한을 산정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연기) ①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3호 라목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는 같은 표 제2호 가목 3), 나목 3) 및 다목 3)의 전문교육(이하 “계속교육”이라 함)에 한하며, 교육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가목 3)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3호 가목의 1) 및 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분야의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려는 경우 동일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한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으로 갈음하는 경우 직무분야는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인정받은 기술등급의 직무분야(같은 표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지정하는 직무분야로 한다.

### 제3장 특급기술자 학점인정

제9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①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라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90학점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학점인

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급기술자의 취득학점은 별표 2의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별표 2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 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④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신고 등) ① 특급기술자가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표 2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 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

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

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 **부 칙(제정 2008. 6.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기술정책팀-3791('07.9.12)에 의해 인정받은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은 이 고시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 폐지)** 이 고시 시행이전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는 기술정책팀-3791('07.9.12)는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한다.

## **부 칙(제정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정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급기술자 이수학점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 규정에 따라 특급기술자가 이수한 학점은 이 고시 시행 후 해당 특급기술자가 최초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의 이수학점과 합산하여 인정한다.

## **부 칙(개정 2011. 6.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1. 1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3. 4.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3.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사람으로서 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어 최초교육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영 부칙 제10조제2항과 같이 최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②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처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이전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변경신고하여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의 승급교육은 받은 것

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미이수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시간 또는 학점만큼은 제외하며, 해당 특급기술자의 차기 계속교육은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90학점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시간에 상관없이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2002년1월1일부터 이 고시 시행전까지 해당교육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  
(제8조제1항 관련)

분야	근거 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중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u>「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u>	
<u>전기·전자</u>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u>광업</u>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u>도시·교통, 토목, 환경</u>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함
	<u>「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u> 및 <u>「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u> 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u>건설관련법령에 따른</u> 건설관련 의무교육	

비 고

1. 상기한 내용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70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같은 표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호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u>교육·훈련 종류</u>	인정사항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b>90학점</b>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b>60학점</b>
	기타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u>건설관련법령에 따라</u>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u>교육</u> <u>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u>	<b>2</b>	수강시간	<b>90학점</b>
무 형 식 교 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b>90학점</b>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b>90학점</b>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b>90학점</b>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b>75학점</b>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b>90학점</b>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b>60학점</b>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b>30학점</b>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b>30학점</b>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b>1</b>	참여시간	<b>40학점</b>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b>90학점</b>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b>60학점</b>

**비 고**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



##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u>생년월일</u>		
	<u>전자우편</u>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구 분	종류	인정 번호	개시년도	월	일	학점 가중치	이수 내역	신청 학점	증빙자료
			종료년도	월	일				
수강교육									
무형식교육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u>교육·훈련</u> 이수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위 표의 구분·종류·인정번호에는 제9조제1항 별표 2의 구분·교육·훈련 종류·인정사항의 해당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종료 연월일은 학점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므로 증빙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수강 종료일·제출일 또는 출판일 등을 기재합니다.
- 증빙자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만들어 첨부하여도 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신청인) 및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u>생년월일</u>	연락처
<u>본인확인</u>	<u>방법</u>	<u>확인자</u>	(서명 또는 인)



##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아래 건설기술자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첨부서류	발급대상자 명부 (출력물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소속업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명"란에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와 본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발급대상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가 기록된 출력물 또는 이동식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속회사에서 이수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입사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